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규정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령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규정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정 해석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 규정을 구체화하며 청사건축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명시함
(안 제2조의2)

나. 매년 각 기관에 통보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침 제정 범위에 ‘수급관리’ 추가(안 제3조제4항)

다. ‘청사의 배정요청’을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변경하고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 구체화(안 제6조제1항)

라. 관계기관의 독립청사 신축시 행정안전부에 건립 위탁 가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배정”이란 청사취득의 수요가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 후 면적을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국무총리비서실

4.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의”를 “국가가 소유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를 “임차한 청사나”로, “그 행정기관”을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관리”를 “수급·시설관리”로 한다.

①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3조 내지 제8조 및 제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직제 제·개정, 국가시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사”를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사”로, “신축·매입 또는 임차”를 “건축·매입·임차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청사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대하여”로,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국민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 방법을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청사 건축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 건축 사

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청사 수요와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계,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지역별로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사의 합동화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운영실태를”을 “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수립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관리기관이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청사의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 해당 행정

기관의 장에게 청사의 이용현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제3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 관련)

1. 국방·군사시설
2. 교정시설
3. 교육연구시설
4. 의료시설
5. 재외공관용 청사
6. 문화 및 집회시설
7. 그 밖에 시설 사용의 주목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이 아닌 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배정”이란 청사취득의 수요가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 후 면적을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삭제 3. 국무총리 소속기관	제2조의2(적용범위) ----- ----- 행정기관----- ----- ----- -----. 1.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삭제 3.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국무총리비서실

<신 설>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2. (생략)

③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4.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총괄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3조 내지 제8조 및 제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국가가 소유한 -----
-----.

1.·2. (현행과 같음)

③-----
-----.
----- 임차한 청사나 -----

----- 해당 행정기관-----.

④ -----

----- 수급·시설관리 -----
-----.

제6조(청사의 배정요청) ①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①청사의 취득은 신축·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직제 제·개정, 국가시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청사-----
----- 건축·매입·임차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청사 사용---

②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8조(청사의 합동화) ①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 청사와의 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민편의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방법을 결정-----.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청사 건축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 건축 사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사의 합동화)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별 청사 수요와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계,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지역별로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사의 합동화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실태조사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수급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해 수립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관리기관이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청사의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사의 이용현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u>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u>),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u>조하여야 한다.</u> ④ ----- <u>제3항에 따라</u> ----- ----- ----- ----- ----- ----- -----. 제11조(시행세칙) ----- ----- ----- ----- <u>경우를 포함한다</u>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청사기획과	
연 락 처	(044) 200 - 1024